한국대학생IT경영학회
(KUSITMS) 정관
(2025년 1월 25일 개정)

KUSITMS
한국대학생IT경영학회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한국대학생IT경영학회(Korean University Students IT, Management Society; KUSITMS, 이하 본 회)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대학생만으로 구성되어, IT 프로덕트의 기획, 개발, 디자인을 공부하고 연구하며 다양한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대한민국의 IT와 경영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본 회는 회원의 권익을 존중하기 위해 회원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동의 없이 유출하지 않는다.

제4조 (정치적 중립성)

① 본 회는 정치 단체의 후원 및 정치 단체와의 정치적 목적 하의 협력과 교류를 거부한다.

② 정치 단체는 정당 및 정당 후원 관련 단체를 의미한다.

제5조 (제1장 총칙의 변경)

① 본 회의 제1장 총칙은 학회의 정체성과 직결되므로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하다.

② 단, 본 회 운영위원회 정수의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 총칙의 변경이 가능하다.

제2장 운영위원회

제 1조 (구성)

운영위원회 내부 조직의 명칭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① 학부학: 학회장, 부학회장으로 구성된다.

② 회장단: 학회장, 부학회장, 경영총괄팀장, 대외홍보팀장, 교육기획팀장으로 구성된다.

③ 운영위원회: 학부학과 경영총괄팀, 대외홍보팀, 교육기획팀으로 구성되며, 운영진이라고도 칭한다.

제2조 (학회장)

① (지위) 학회의 총체적 운영권과 내외부적 대표권을 가진다.

② (선출)

1. 직전 기수를 운영진으로 수료한 자에 한해 자격이 주어진다.
2. 보궐될 경우, 이전 기수 운영진 및 직전 기수 회원으로 수료한 자에게도 자격을 줄 수 있다.
3. 2에서 보궐될 경우, 이전 기수 회원으로 수료한 자에게도 자격을 줄 수 있다.

③ (임기) 학회장의 임기는 당선 시의 선거 총회 종료 직후부터 다음 총회 종료 시까지로 한다.

④ (권한) 학회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1. 본 회의 최고 운영 권한을 가진다.
2. 총체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경영총괄팀, 교육기획팀, 대외홍보팀을 관리한다.
3. 부학회장을 포함한 나머지 팀장들을 지명할 권한을 가진다.
4. 활동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운영위원에 대해 탄핵 발의를 할 수 있다.
5. 회원 제명 발의 시,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
6. 학회 조직도 개편 및 신규 팀 생성 권한을 가진다.
7. OB 연락망 구축 및 운영을 담당한다.

제3조 (부학회장)

① (지위) 학회장의 보좌 및 각 부서의 조율, 학회장 부재 시 대행을 담당한다.

② (선출)

1. 이전 기수를 운영진 및 회원으로 수료한 자에 한해 자격이 주어진다.
2. 학회장 선출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보궐될 경우, 팀장 선출 시에 지원 가능하며 학회장이 지명 권한을 가진다.

③ (임기) 부학회장의 임기는 당선 시의 선거 총회 종료 직후부터 다음 총회 종료 시까지로 한다.

④ (권한) 부학회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1. 학회장 부재 시 대표권 및 회의의 진행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학회장의 승인 하에 대외적 대표권을 임시로 행사할 수 있다.
3. 부서에 상관없이 본 회의 모든 공식회의에 참석, 발언, 투표 권한을 가진다.
4. 학회장의 부적절한 운영권 행사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탄핵 발의를 할 수 있다.
5. 경영총괄팀, 교육기획팀, 대외홍보팀에 관한 감사 권한을 가진다.

⑤ (감사) 부학회장은 경영총괄팀, 교육기획팀, 대외홍보팀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감사 권한을 가진다.

1. 내부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감사 업무 수행을 체계화하여 학회 운영의 적정성, 공정성 및 학회원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감사는 불시감사/수시감사/서면감사/부분감사의 형태로 진행된다. 다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감사의 형태를 바꾸어 회의 참관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3. 각 팀의 자료 및 회의록을 열람할 권한을 가진다.
4. 각 팀의 부적절한 운영권 행사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운영위원 총회를 거쳐 부적절한 권한을 행사한 운영진을 차단 혹은 직위 해제할 수 있다.

제4조 (경영총괄팀)

① (구성) 경영총괄팀은 경영총괄팀장과 경영총괄팀원으로 구성된다.

1. (경영총괄팀장) 경영총괄팀을 대표해 팀 내부 업무를 총괄하고, 학부학과의

소통을 전담한다.

2. (경영총괄팀원) 학회 내의 행사 및 운영의 실무를 담당한다.

① (지위) 학회 내의 행사 및 운영을 담당한다.

② (선출) 운영위원 선출회의를 거쳐 신임 학회장의 지명으로 선출된다.

③ (임기) 선출 시의 운영위원 총회 종료 직후부터 다음 총회 종료 시까지로 한다.

④ (권한) 경영총괄팀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1. 학회 내부 행사를 주관한다.
2. 학회 예산을 편성/사용하고 회비 책정/수금을 담당한다.
3. 학회원 및 학회 물품 관리 그리고 대관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4. 학회원에게 소개할 IT 및 경영과 관련된 외부행사를 선별한다.

제5조 (교육기획팀)

① (구성) 교육기획팀은 교육기획팀장과 교육기획팀원으로 구성된다.

1. (교육기획팀장) 교육기획팀을 대표해 팀 내부 업무를 총괄하고, 학부학과의 소통을 전담한다.
2. (교육기획팀원) 학회 내의 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의 실무를 담당한다.

① (지위) 학회의 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을 담당한다.

② (선출) 운영위원 선출회의를 거쳐 신임 학회장의 지명으로 선출된다.

③ (임기) 선출 시의 운영위원 총회 종료 직후부터 다음 총회 종료 시까지로 한다.

④ (권한) 교육기획팀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1. 회원 교육을 위한 강의와 과제 그리고 교육기획팀이 담당하는 커리큘럼의 조모임을 담당한다.
2. 학술적인 행사를 주관한다.
3. 교육 태도가 부적절한 회원의 징계 수위를 회칙에 의거하여 책정하고, 행사한다. 단, 회원 제명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 총회에 상정하여 결정한다.

제6조 (대외홍보팀)

① (구성) 대외홍보팀은 대외홍보팀장과 대외홍보팀원으로 구성된다.

1. (대외홍보팀장)

1) 대외홍보팀을 대표해 팀 내부 업무를 총괄하고, 학부학과의 소통을 전담한다.

2) 학회장의 승인 하에 대외적 대표권을 임시로 행사할 수 있다. 단, 이때 행사된 대표 권한은 사후에 학회장 혹은 운영위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2. (대외홍보팀원) 학회의 대내외적 홍보 및 홍보물 기획 기획/제작을 담당한다.

① (지위) 학회의 대내외적인 홍보 및 홍보물 기획/제작을 담당한다.

② (선출) 운영위원 선출회의를 거쳐 신임 학회장의 지명으로 선출된다.

③ (임기) 선출 시의 운영위원 총회 종료 직후부터 다음 총회 종료 시까지로 한다.

④ (권한) 대외홍보팀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1. 포럼, 세미나를 포함한 학회의 행사 개최 시 홍보 및 안내를 담당한다.
2. 홍보 및 제휴를 위한 외부단체 섭외를 담당한다.
3. 본 회의 카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블로그 등 홍보페이지 관리를 담당한다.
4. 홍보용 영상 및 포스터, 기사 제작권을 갖는다.

제7조 (인수 위원회)

① (지위) 선거 총회 이후 차기 운영위원에게 인수인계를 담당한다.

② (선출) 차기 학부학이 정해진 뒤 직전 기수 운영위원은 인수 위원회가 된다.

③ (임기) 인수 위원회 발동 시기는 차기 운영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이며, 종료 기간은 다음 기수 회원 모집 전으로 한다.

④ (권한) 인수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1. 각 부서의 활동 내용에 관해서 차기 임원진에게 인수인계를 담당한다.
2. 인수 위원회 종료 전까지 학회 및 각 팀의 운영에 대한 조언을 할 수 있다.
3. 학회장 선출 후 임원 결정 회의에 참석 및 발언 권한을 가진다.

제3장 회원제도

제1조 (대상)

회원제도는 정규 모집을 거쳐 활동 회원으로 승인된 정회원/운영위원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제2조 (회원의 자격 제한)

① 대학생 신분을 가진 자(졸업 유예자, 휴학생, 수료생, 외국 대학 포함)

② 정치적 목적을 가지지 않은 자

③ 매주 정기 커리큘럼에 성실히 참석 가능한 자

④ 부정한 경로가 아닌, 큐시즘 공식 모집을 통해 운영진 및 학회원으로 선출된 자

⑤ 회원의 자격 제한은 위 ①, ②, ③, ④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제3조 (기수)

학회의 한 기수는 방학을 포함한 한 학기를 의미한다.

제4조 (회원모집)

① 회원모집은 한국 내 대학 개강/방학 일시에 맞춰 연 2회 진행한다.

② 회원모집 시기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회원모집의 총책임자는 학회장이다.

제5조(회원 수료 기준)

상/벌점제를 통해서 회원 수료 여부를 결정한다.

① 해당 기수의 마지막 활동을 기준으로, 최종 벌점이 5점 이하일 시 수료할 수 있다.

② 상/벌점은 제3장 제6조(상/벌점 부여)와 제3장 제7조(상/벌점 부여 기준)에 따라 부여된다.

제6조 (상/벌점 부여)

① 본 회의 상/벌점 부여의 총책임자는 경영총괄팀장이다.

② 경영총괄팀의 사무 담당은 상/벌점 현황을 매주 1회 전체 공개해야한다.

③ 경영총괄팀의 사무 담당은 상/벌점 부여 이후에 해당 학회원에게 안내해야한다.

제7조(상/벌점 부여 기준)

① 큐시즘 공식 네이버 카페에 있는 결석계를 결석일 2일전 23:59까지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한다. 결석일 2일전 23:59까지 제출 하지 않을 시 '무단 결석'으로 간주하여 벌점 3점을 부과한다.

② 다음과 같은 사유는 결석계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증빙서류 지참 시 '인정 결석'으로 하여 벌점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4촌 이내의 경조사
2. 질병으로 인한 결석
3. 천재지변, 감염병 등의 국가위기 및 재난상황으로 인한 행정명령
4. 이 외에 운영위원회 정수의 2/3가 동의하는 사유

③ 다음과 같은 사유는결석계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증빙서류 지참 시 '사유 결석'으로 하여 벌점 1점을 부과한다.

1. 당일 학교 시험 및 수업
2. 이 외에 운영위원회 정수의 2/3가 동의하는 사유

④ 제출한 결석계의 결석 사유가 ②, ③에서 정의한 사유 결석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결석은 '무단결석'으로 간주하여 벌점 2점을 부과한다.

⑤ ①, ②, ③, ④의 사유 외에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항목당 벌점 1점을 부과한다.

1. 교육 시작 후 30분 이내 지각 (30분이 넘었을 경우, 결석 처리)
2. 교육 종료 1시간 전 조퇴
3. 학회에서 공식적으로 진행하는 조모임에 결석할 경우
4. 단, 1. 및 2.와 동일한 사유에 의거한 경우에는 벌점을 중복하여 부과하지 않는다.

⑥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상점 2점을 부여하여 벌점을 감면한다. (수료일 전날 부여)

1. TF 팀의 PM으로 참여하여 팀장 3명 중 2/3 이상의 찬성을 받은 자
2. TF 팀의 팀장으로 참여하여 PM과 팀장 2명 중 2/3 이상의 찬성을 받은 자
3. TF 팀의 팀원으로 참여하여 해당 팀 팀장의 찬성을 받은 자

⑦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상점 1점을 부여하여 벌점을 감면한다.

1. 명절 및 연휴 기간 열리는 커리큘럼에 지각하지 않고 참석한 경우
2. 경영총괄팀이 선별한, 큐시즘 활동기간에 진행된 외부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3. 해당 기수 활동이 끝난 후, 활동 수기를 작성한 경우 (수료일 전날까지 공식 양식에 따라 큐시즘 공식 네이버 카페 혹은 개인 블로그에 작성한 경우만 인정)
4. 운영위원으로서 맡은 직무를 끝까지 수행한 경우 (수료일 전날 부여)
5. 해당 기수에 운영되는 스터디에 성실히 임한 경우
6. 단, 5의 판단기준은 아래와 같이 따른다.

    1. 스터디의 팀장이 해당 스터디의 보고서를 모두 제출한 경우 해당 스터디의 팀장에게 상점 1점을 부여한다.

    2. 해당 스터디를 진행하는 팀원 및 팀장이 스터디 기간동안 모든 스터디 일정에 출석하여 과제를 완료한 경우 해당 학회원에게 상점 1점을 부여한다.

⑧ 특별한 사유로 상벌점을 부과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경우, 운영위원 총회를 통해 결정한다.

제8조(온라인 세션 벌점 부여 기준)

단, 정기 커리큘럼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을 경우, 해당 기준이 추가 적용된다.

① 본 항목은 제3장 제7조의 ① ~ ④에 의거하여 동일하게 적용한다.

②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제 3조 제6조 ④에 추가 적용하여 벌점 1점을 부과한다.

1. 10분 이상 캠 활성화를 하지 않고 세션을 수강할 경우
2. 세션 도중 무단으로 10분 이상 자리를 비울 경우. 이 부분은 경영총괄팀장

또는 경영총괄팀의 사무/대관 담당 팀원의 판단에 따른다

3. 세션 참여 회원의 불성실한 태도가 의심되는 경우, 경영총괄팀장 혹은 출결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학회원에게 특정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4. 교육기획팀이 부여하는 과제를 세션 커리큘럼 당일 자정 이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③ ②에서 정의한 기준을 크게 초과하는 경우, 무단결석으로 간주하여 벌점 2점을 부과한다.

1. 20분 이상 지속해서 캠 활성화를 하지 않고 세션을 수강할 경우
2. 세션 도중 무단으로 20분 이상 자리를 비우거나, 10분 이상 자리를 비운 사실이 2회 이상 적발되는 경우. 이 부분은 경영총괄팀장 또는 경영총괄팀의 사무/대관 담당 팀원의 판단에 따른다.
3. 2.의 기준이 교차 해당하는 경우

제4장 징계

제1조 (징계의 종류)

본 회에 다음의 징계를 둔다.

① 정회원 자격 박탈 (제명)

② 학회 지원 자격 제한

③ 블랙리스트를 통한 차단

제2조 (정회원 자격 박탈 조건)

참여의 성실성을 바탕으로 한다.

①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조모임 및 정기 커리큘럼에 결석한 자

②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조모임 및 정기 커리큘럼에 지각, 조퇴 및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 자

③ 누적 벌점이 10점 이상인 자

④ ①, ② 및 ③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여 운영위원이 학회장에게 정회원 자격 박탈을 건의할 수 있다.

제3조 (학회 지원 자격 제한에 대한 조건)

① 정당한 사유 없이 학회 활동 시작일로부터(당일 포함) 중도 탈퇴하는 경우, 이후 2기수 동안의 학회 지원을 제한한다.

② 연장 회원이 중도 탈퇴한 경우, ①과 더불어 지원 시 연장 학회원 지원이 아닌 신규 학회원 지원으로 제한한다.

③ ①,② 에 해당하는 자의 학회 지원 자격 제한 여부는 운영위원 총회를 통해 결정한다.

제4조 (블랙리스트를 통한 차단 조건)

① 본 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는 자

② 본 회의 설립 목적 및 취지에 반하는 행동으로 운영에 차질을 빚게 한 자

③ ①과 ②에 해당하는 자의 블랙리스트를 통한 차단 여부는 학부학를 통해 결정한다.

④ 해당 사건의 이해관계자가 모두 요청할 시에는 회장단 회의를 통해 결정될 수 있다.

제5장 재무

제1조

본 회의 회계와 집행은 경영총괄팀장을 총책임자로 한다.

제2조

회계 집행과 관련하여 회계 담당은 결산 내역을 매월 1회, 네이버 공식 카페의 해당 기수 예산 관리 게시판에 공개한다.

제3조 (결산내역 공개)

① 게시에 있어서 부정, 불비한 경우가 적발되었을 경우, 운영위원 총회를 거쳐 회계 담당을 차단하고 징계에 대한 추가 건의를 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 총회에서 정기적인 예산 집행, 산정, 보고가 매월 1회 이루어진다.

③ 단, 각 월에 운영위원 총회가 없을 경우, ②의 보고를 생략한다.

제4조

회비 지불 이후 학회 활동을 취소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회비를 환급한다.

① 학회 활동 시작일 이전에 활동을 취소하는 경우, 지불한 회비 전액을 환급한다.

③ 학회 활동 시작일 부터는, 지불한 회비를 환급하지 않는다.

④ 이 부분에 대해 면접 시 PRECHECK 문서에 명시하고 서명을 통해 동의받는다.

제6장 회의

제1조

회의는 중요 수준에 의해 4가지로 분류하며 명시된 회의만이 유효하다.

제2조 (회원 총회)

임원 탄핵 및 재선 등 본 회의 중요 사항을 논의 및 결정하는 최고회의

① 회원 총회 책임자는 해당 기수의 학회장으로 한다.

② 회원 총회 성사의 정족수는 당 학기 활동 정회원 수의 1/2 이상이다.

③ 이전 기수를 수료한 정회원은 추가로 회원 총회의 의결권을 갖는다.

④ 참여 총원의 2 / 3이상의 투표를 통해 총회를 발의할 수 있다.

⑤ 총회 논의사항은 2 / 3 이상의 투표가 있을 경우 실행된다.

⑥ 긴급의결사항의 경우, 운영위원의 승인 하에 임시로 운영위원 총회가 회원 총회의 권한을 대리한다.

제3조 (선거 총회)

다음 기수 학회장 및 부학회장을 선출하는 회의로 하위의 각 항은 선거규율과 동등하다.

① 책임자는 해당 기수 학회장을 원칙으로 하며 학회장 부재 시 부학회장에게 위임한다.

② 적어도 한 달 전, 본 회 공식사이트에 학회장 및 부학회장 후보 등록 기간을 공지한다.

③ 후보자 등록은 해당 기수의 투표일 최소 2주 전으로 제한하고 차기 학부학의 투표는 수료일 1주일전부터 수료일 사이에 진행한다.

④ 차기 임원에 대한 투표의 가부는 총원의 2/3 이상의 투표율을 기록해야하며, 이 중 투표 인원의 과반수의 득표로써 결정된다.

제4조 (운영위원 선출회의)

차기 팀장 후보자를 추천 혹은 선발하고 그 자질에 대해 논하는 회의

① 차기 학회장을 총책임자로 한다.

② 인수위원회 위원 및 차기 학회장, 부학회장을 참석 대상으로 한다.

③ 회의 참석자는 현 학회 정회원 중 자유롭게 팀장 후보자를 추천 혹은 권고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 선출회의에서 차기 팀장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차기 학회장에게 있다.

제5조 (운영위원 총회)

해당 운영위원들이 본 회의 운영과 관련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논하는 회의

① 학회장을 총책임자로 한다.

② 모든 운영위원을 참석 대상으로 한다.

제7장 회칙 변경

제1조 (시기)

한 기수가 종료된 이후부터 다음 기수 회원 모집이 시작되기 전까지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회원 오리엔테이션 전까지로 연장할 수 있다.

제2조 (책임)

회칙 변경의 총책임자는 차기 학회장이며 서기가 타인이더라도 차기 학회장의 명의로 변경 사항을 기록한다.

제3조 (참석 대상)

회칙 변경 회의 참석 대상은 다음 기수 운영위원으로 하며 의결권을 가진다.

제4조 (정족수)

제3조(참석 대상)의 2/3 이상이 참석해야 유효하다.

제5조 (변경)

회의에 참석한 인원의 2/3 이상이 찬성할 경우, 변경 가능하다.

제6조 (재회의)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재회의를 할 수 있다. 단, 적어도 재회의 당일 3일 전에는 참석 대상에게 재회의 일정을 통보해야 한다.

①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경우

② (기간) 제7장 제1조와 동일

제7조 (수정)

회칙 제1장의 변경은 해당 장의 내용에 따른다.

제8조 (회칙변경 제안)

학회원은 회칙변경을 시기와 관계없이 학부학에게 자유롭게 건의할 수 있으며,

건의된 회칙은 다음 운영위원 총회에 반드시 안건으로 올려야한다.

제8장 탄핵 소추

제1조 (대상)

탄핵의 대상이 되는 자는 학회장, 부학회장으로 한다.

제2조 (진행)

탄핵 소추의 진행은 학회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회장이 탄핵의 대상이 되는 경우, 부학회장이 대신한다.

제3조 (발의)

① 탄핵 소추는 운영위원 팀장 지위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한다.

② 발의자는 피소추자의 성명·지위와 탄핵 소추의 사유·증거·기타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4조 (의결)

탄핵 소추 의결은 운영위원회 총인원의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5조 (권한)

탄핵 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 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제6조 (결정)

회원 총회 또는 운영위원 총회 총인원의 만장일치의 찬성으로 탄핵을 결정할 수 있다.

제9장 OB 연락망

제1조 (OB 연락망 역할)

OB 연락망의 궁극적인 목표는 큐시즘 성장도모이며, 이를 통해서 이전 기수와 현 기수 간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한다.

제2조 (OB 연락망 등록 조건)

한 기수 이상 큐시즘을 수료한 자로 이루어진다.

제3조(책임)

OB 연락망의 책임자는 각 기수의 학회장과 부학회장으로 이루어진다.

제4조 (진행)

① 다음 기수가 시작되기 전, 현 기수 학회장은 OB 연락망 업데이트를 실시한다.

② 제9장 제2조의 책임자들은 OB 회원이 참여 가능한 큐시즘 내 행사에 참여를 유도한다.

제5조 (OB 연락망 자격)

① OB 회원은 교육 커리큘럼에 참석 가능하다.

② 희망하는 자에 한하여 OB 초청 강연을 지원해 준다.

제6조 (OB 연락망 제명 조건, 제4장 제3조(블랙리스트를 통한 차단 조건) 과 동일)

① 본 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는 자

② 본 회의 설립 목적 및 취지에 반하는 행동으로 운영에 차질을 빚게 한 자

③ ①과 ②에 해당하는 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제명 여부를 결정한다.

④ 제명 대상자의 의결은 현 기수 운영진 1/2 참석, 해당 기수 학부학 1/2 참석, 참석자의 2/3

찬성이 있어야 한다.



KUSITMS
한국대학생IT경영학회

제10장 TF팀

제1조 (TF팀 신설 및 유지)

① 큐시즘의 OB와 YB 모두 해당 기수 학회장 혹은 부학회장에게 TF팀 신설을 건의 할 수 있다.

② TF 팀 신설 판단은 해당 기수 학회장과 부학회장이 큐시즘 정관 제1장(총칙) 제2조(목적)에 부합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③ 해당 TF 팀의 지속적인 유지가 필요하다고 학회장과 부학회장이 판단하면, 본 장에 제10장 제4조(TF팀)에 기재해놓는다.

④ TF 신설시, 명확한 목적 및 개요를 담은 문서를 작성(날인 포함)하여 총책임자(부학회장)과 TF장이 각 1부씩 보관한다.

제2조 (TF팀 운영)

① TF팀 운영 및 관리의 총책임자는 해당 기수의 부학회장이다.

1. TF팀의 운영 및 관리의 총책임자는 부학회장으로, 모든 관리 권한 및 인수인계 결정권 등을 가진다.

② TF팀의 장은 학회장과 부학회장이 직접 지명한다.

1. TF팀의 총책임자와 장은 일치할 필요가 없다.
2. TF장은 퇴임 시 부학회장과 정식절차를 통해 최소 1달 전 해당 사실을 알리고 모든 인수인계 직후 TF장 활동을 중단한다.

③ TF팀의 모집 시기와 인원은 부학회장과 해당 TF팀의 장이 자유롭게 결정한다.

1. TF팀의 인원은 큐시즘의 해당 기수 학회원 혹은 기수를 수료한 자에 한해서 구성되어야 한다.
2. TF팀의 인원 중 큐시즘의 해당 기수 학회원이 아니면서 기수를 수료하지 않은 자가 포함되어야 할 경우, 저작권 활용에 대한 동의 문서 (날인 포함)를 작성하여 총책임자(부학회장)와 해당 인원이 각 1부씩 보관한다.

3. TF팀의 리크루팅 및 인수인계는 부학회장의 판단하에 진행한다.

④ TF팀에 필요한 자원은 부학회장의 판단 하에 지원한다.
학회비 사용의 경우 해당 기수의 경영총괄팀장과 상의 후 결정한다.

⑤ TF팀의 활동 평가는 TF팀이 창설된 날을 기준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진행된다.

1. TF팀의 장이 총책임자 (부학회장)에게 한 달에 한 번씩 활동 현황 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활동 평가가 진행된다.
2. 활동 현황 보고서는 '지각 제출 4회, 미제출 2회' 이상이 누적될 경우, 학회장과 부학회장이 TF팀의 종료를 논의하고, 판단 하에 종료한다. (제10장 제4조 - ①)

제 3조 (TF팀의 종료)

① TF팀의 장이 종료를 희망하는 경우, 시기와 관계없이 총책임자 (부학회장)에게 건의해야 하며, 학회장과 부학회장의 판단 하에 종료한다.

② 총책임자 (부학회장)가 TF팀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2부 이상의 활동 현황 보고서를 기준으로 TF팀 유지 여부를 판단하여 종료할 수 있다.

제 4조 (TF팀)

① 큐시즘 공식 홈페이지 TF팀

② 큐시즘 공식 전시회 TF팀